

1. 개정이유

최근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통신을 활용한 외부와의 연결 기능이 확산됨에 따라, 해킹 등의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고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인증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국토교통부령 제 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소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와”를 “취소, 사업장의 폐쇄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로, “직무정지명령”을 “직무정지명령 및 같은 법 제30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효력정지”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제5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 기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2]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효력정지의 기준 (제8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처분기준이 효력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와 관련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의 11 제1항 제1호	인증취소		
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법 제30조의 11 제1항 제2호	인증취소		
다. 법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 11 제1항 제3호			
1)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효력정지 1개월	효력정지 3개월	인증취소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효력정지 10일	효력정지 1개월
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 11 제1항 제4호	효력정지 2개월	효력정지 4개월	인증취소
마. 법 제30조의10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30조의 11 제1항 제5호	효력정지 2개월	효력정지 4개월	인증취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u>취소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와</u>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제64조제2항·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u>직무정지명령</u> 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u>취소, 사업장의 폐쇄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u> ,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제64조제2항·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u>직무정지명령</u> 및 같은 법 제30조의11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u>취소·효력정지</u> 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증거에 의한 처분) ① (생략) 1. ~ 4. (생략) <u><신 설></u>	제3조(증거에 의한 처분) ①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인증의 <u>취소 또는 효력정지</u>
제5조(처분의 기준) ①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u>별표</u> 와 같다. ③ -----, <u>별표</u> 에서 순차적인	제5조(처분의 기준) ①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u>별표 1</u> 과 같다. ③ -----, <u>별표 1</u> 에서 순차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때(순차적인 처분기준을 정하였으나 그 다음 순차의 처분기준이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사업등의 정지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사업등의 정지기간으로 한다.

제6조(행정처분의 감경등) ①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생략)
2. -----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따른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7조(처분의 집행) ① 관할관청은 대행자등·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별표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 행정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때(순차적인 처분기준을 정하였으나 그 다음 순차의 처분기준이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사업등의 정지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사업등의 정지기간으로 한다.

제6조(행정처분의 감경등) ①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7조(처분의 집행) ① 관할관청은 대행자등·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별표 1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 행정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의2(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 인증 취소 등 기준) 제5조

부터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